은행 자체 심의 번호 : 2010-준법-375

은행 자체 심의일 : 2010. 11. 17.

#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<u>이 설명서</u>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<u>참고자료</u>이며, <u>실제 계약은 <mark>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이 적용</u>됩니다. <u>계약을</u>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교부됩니다.</u></mark>

## 1. 개요 및 특징

-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입니다.

### 2. 이자에 관한 사항

가. 적용이율(연, %, 세전)

상품종류	DB형		DC/IRA형	
기간	연이율	연수익률	연이율	연수익률
3개월	2.78	_	2.6	_
6개월	2.98	_	2.8	_
1년	3.53	3.53	3.35	3.35
2년	3.63	3.57	3.45	3.39
3년	3.63	3.51	3.45	3.34
5년	3.63	3.39	3.45	3.23

주1) 상기 이율은 2010. 11. 18. 현재 고시금리입니다.

#### 주2) 신규시에는 신규일 당시에 고시된 이율이 적용되므로 상기이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- 나. 중도해지 이율
  - (1) 신규일 또는 만기연장일 당시 고시된 일반 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
  - (2) 특별중도해지 적용이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
    - (가) 계약기간이 3월, 6월, 1년인 계약- 기간별 약정금리
    - (나) 계약기간이 2년, 3년, 5년인 계약
      - 2년 미만 예치 시: 1년제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
      - 2년 이상 3년 미만 예치 시 : 2년제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

- 3년 이상 예치 시 : 3년제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
- 다. 이율적용 방식
  - (1) 신규일 현재 고시된 기간별 이율 적용(DB형, DC/IRA형 각각 기간별 금리고시)
  - (2) 만기지정식의 경우 계약기간 내 포함되는 일반 정기예금 중 최장기 기가별 고시금리 적용
- 라. 이자지급 시기 · 방법 : 만기일시지급
- 마. 이자계산방식: 단리식

### 3.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

- 해당 사항 없음

## 4.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

- 만기·중도 해지방법 및 절차

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 지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또는 해지합니다.

#### ※ 특별중도해지

- 특별중도해지 사유
  - 1. 퇴직,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  - 2.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
    - 가.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    - 나.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
    - 다. 그 밖에 천재·사변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
  - 3.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
  - 4.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  - 5. 수탁자의 사임
  - 6.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  - 7.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특별 중도인출의 경우
  - 8.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
  - 9. 수수료의 징수
- 특별중도해지 시 금리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
### 5.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

가. 가입대상 :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을 영위하는 자

#### 나. 계약기간

- 일반 퇴직연금정기예금 : 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, 5년
- 만기지정식 퇴직연금정기예금 : 3개월이상~5년이내 자유롭게 지정 가능
- 라. 가입금액: 1워 이상
- 마. 추가입금 :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,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

#### 바. 분할지급

- 만기포함 3회까지 분할지급 가능하며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3회 분할지급 가능합니다.
- 단,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자 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의 경우 분할지급 횟수에서 제외합니다.

#### 사. 만기연장

- 이자원가 후 최초계약기간 단위로 자동연장(다만,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)
-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경우 일반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계약기간으로 변경 적용하여 연장되며, 별도 선택이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합니다.

## 6.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

-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"최고 5천원까지" 보호합니다. 다만 확정급여(DB)형제도의 경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# 7. 은행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

- 중도해지시는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합니다.
- 특별중도해지시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.
- 질권설정, 담보제공, 지급정지,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.
- 세금우대저축, 생계형가입이 불가합니다.

# 8. 기타 계약의 주요내용

- 기타사항은 「거치식 예금 약관」이 적용됩니다.

\* 본 상품설명서는 고객의 안내를 돕기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은 행과 고객간의 계약관계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, 실제 계약 내용은 수 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.